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2276 제출연월일 : 2024. 7. 26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4조(공공시설의 설치 등)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도로, 공원, 녹지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존치시설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따라 존치하게 되는 시설이나 그밖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제44조(제52조의2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 - 1. 이 법 시행 전에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승인·변경승인 및 고시 된 실시계획
 - 2. 이 법 시행 전에 제52조의2에 따라 승인 및 변경승인된 재정비시행계획

- 3. 이 법 시행 전에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「산업단지 인·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에 따라 수립(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) ·승인(변경승인을 포함한다) 및 고시된 물류단지계획
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이 이 법 시행 이후 변경 승인되거나 수립이 변경되어 고시된 경우(제2호에 따른 재정비시행 계획의 경우에는 변경승인된 경우를 말한다) 그 변경된 계획

신・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아 혂 제44조(시설부담금) ① 물류단지 제44조(공공시설의 설치 등) 물류 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도로, 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도 공원, 녹지,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, 공원, 녹지, 그 밖에 대통령 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 보존하게 할 수 있다. 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.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공 시설의 설치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 위에서 제42조에 따른 존치시설 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납 부하게 할 수 있다. ③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, 징수방법,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